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18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 천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(춘천)2018누888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군수
제 1 심 판 결	춘천지방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7구합631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0. 24.
판 결 선 고	2018. 11. 21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6. 6. 7.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 1,277,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18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복형

판사 지창구

판사 류영재